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물류취약지역 요금 실태조사 근거 마련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34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2208234)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물류취약지역 요금 수준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2조)	2
가. 검토의견	3
나. 국토교통부 의견	6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220823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2. 18.
3. 회 부 일 : 2025.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과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그런데 현재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물류취약지역 요금 수준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u>실태조사를</u> 참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나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u>- ----- -----. 1. <u>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경우</u> 2. <u>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② -----<u>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u>----- ----- -----. ③·④ (현행 제3항·제4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일부 택배업체 등이 방과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에 대해서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는 사례²⁾가 발생한 바 있음.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8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국내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생활물류시설 현황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현황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신기술 현황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기호일보, 무의도 연륙교 생긴 지 언젠데… 섬 기준 택배비 부과 여전, 2025.03.18.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420>

노컷뉴스, [단독]“아직도 연륙도에 추가택배비를?”…울영·무신사 등 적발, 2024.9.30.

<https://www.nocutnews.co.kr/news/6220238>

이에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이하 “연륙도”라 함) 등 물류취약지역의 요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요금 부과를 방지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령 상 물류취약지역³⁾은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⁴⁾을 말함.

따라서 연륙도가 물류취약지역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태조사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연륙도’ 또는 ‘물류취약지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2.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3.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02호, 2024. 6. 11., 제정.]

제1조(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지역을 말한다.

참고로, 물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배송비 등에 대해서 이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생활물류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중 주요 과업내용 】

- I. 용역의 개요
2. 일반사항
- 나. 주요 과업내용
- 3) 생활물류산업 및 정책 대국민 인식 조사
- 택배서비스업의 경우 물류취약지역 이용자 대상 추가배송비, 배송기간 등 서비스 수준 조사 추진

구분	물류취약지역(56개 시·군·구)
부산(1)	강서구(가덕도동)
인천(4)	중구(홍유동), 서구(신흥원창동), 강화군(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경기(3)	안산시(대부동), 화성시(우정읍, 서신면), 가평군(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북면, 조종면)
강원(13)	춘천시(동산면, 북산면), 원주시(귀래면), 삼척시(가곡면), 홍천군(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영귀미면), 횡성군(안흥면, 둔내면, 공근면, 서원면), 영월군(상동읍, 북면, 남면, 주천면, 김삿갓면, 한반도면, 무릉도원면, 산술면), 평창군(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정선군(남면, 북평면, 임계면, 화암면, 여량면), 철원군(철원읍,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서면, 근남면), 화천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양구군(동면, 방산면, 해안면, 국토정중앙면), 인제군(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고성군(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충북(1)	영동군(용화면)
충남(6)	보령시(웅천읍, 오천면, 주산면, 미산면), 서산시(팔봉면, 지곡면), 당진시(석문면), 서천군(장항읍), 홍성군(서부면), 태안군(안면읍, 근흥면)
전북(7)	군산시(옥도면), 완주군(상관면), 진안군(용담면, 성수면, 정천면, 주천면), 무주군(무봉면), 장수군(장수읍, 번암면), 고창군(심원면, 무안면), 부안군(계화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위도면)
전남(10)	목포시(유달동),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월호동), 고흥군(도양읍,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영남면, 과역면), 보성군(별교읍, 문덕면), 해남군(화산면, 송지면, 화원면), 무안군(망운면), 영광군(낙월면), 완도군(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진도군(진도읍,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신안군(지도읍, 압해읍, 중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경북(3)	영덕군(창수면), 봉화군(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울릉군(울릉읍, 서면, 북면)
경남(6)	통영시(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옥지면, 한산면, 사량면), 사천시(동서동), 양산시(원동면), 남해군(상주면, 미조면), 하동군(금남면, 진교면), 함천군(봉산면)
제주(2)	제주시(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한편, 법 제22조제4항⁵⁾은 실태조사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연륙교 개통으로 섬이 육지와 연결되었음에도 일부 택배사에서 도선료 등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의 요금 수준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함.

다만, 실태조사의 대상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개정보다 시행령 내 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사에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이고, 모든 연륙도서가 물류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 내 실태조사의 대상 규정 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의 요금 현황’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0

5)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